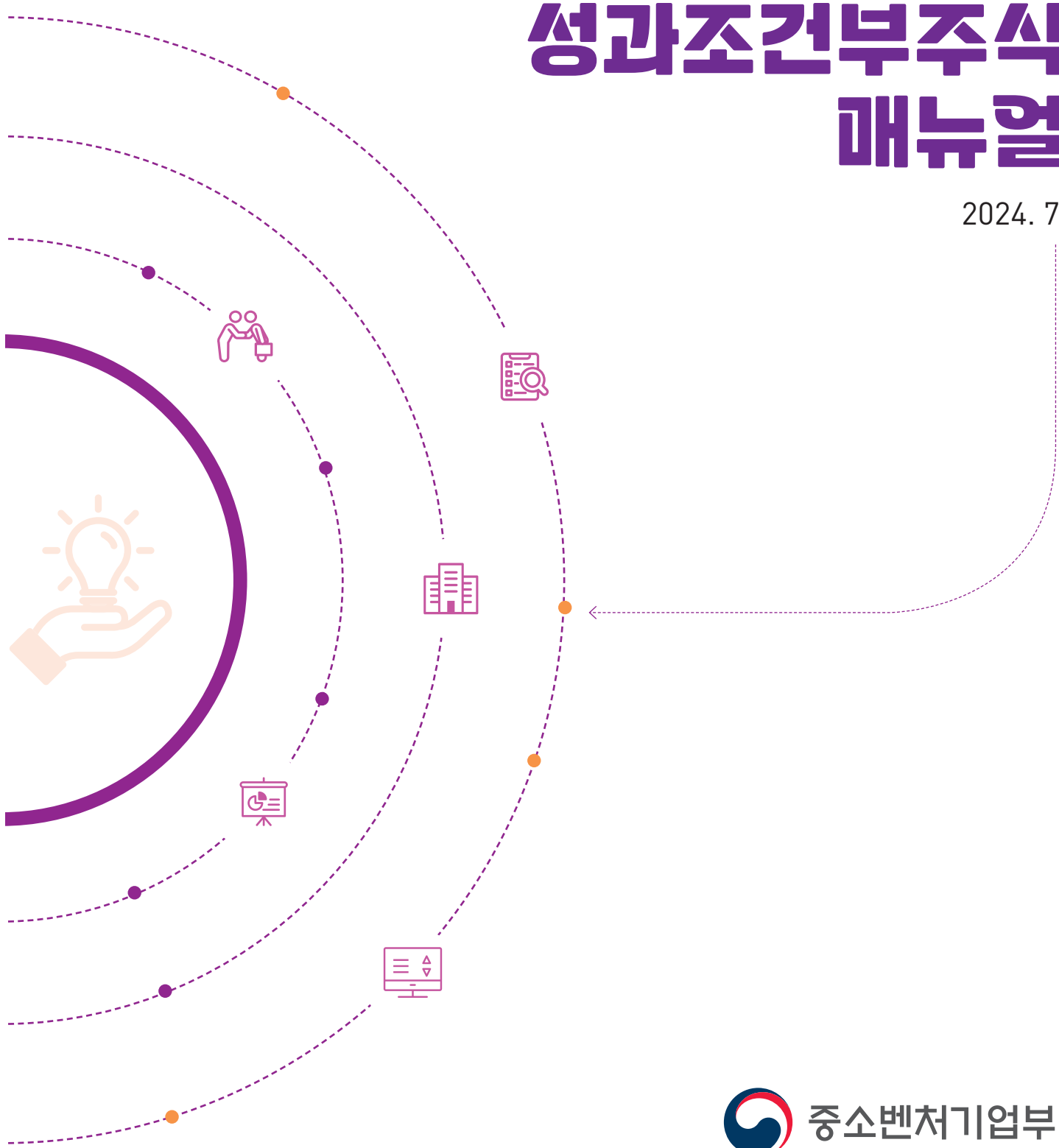


2024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성과조건부주식 매뉴얼

2024. 7.



목 차

제1장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분류	1
1-1.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	3
1-2. 성과조건부주식의 종류	8
제2장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체결	11
2-1.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주체	13
2-2.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	14
2-3. 정관상 근거 규정과 등기	17
2-4.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위한 주주총회	20
2-5.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신고	23
2-6.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28
제3장 성과조건부주식의 권리확정	31
3-1. 성과조건부주식 권리확정의 의의와 효과	33
3-2. 성과조건 미달성 시 권리관계의 변동	34
3-3.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분쟁의 해결	35
제4장 성과조건부주식 과세체계	39
4-1. 성과조건부주식 조세제도 개관	41
4-2. 부당행위계산 부인	42
4-3. 임직원의 근로·양도소득세 납부	43
4-4. 손금산입	45

목 차

Q & A 47

부록 53

1.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 55

2. 상법 관련 규정 59

3.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 66

4. 소득세법 관련 규정 69

5. 법인세법 관련 규정 72

제1장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1-1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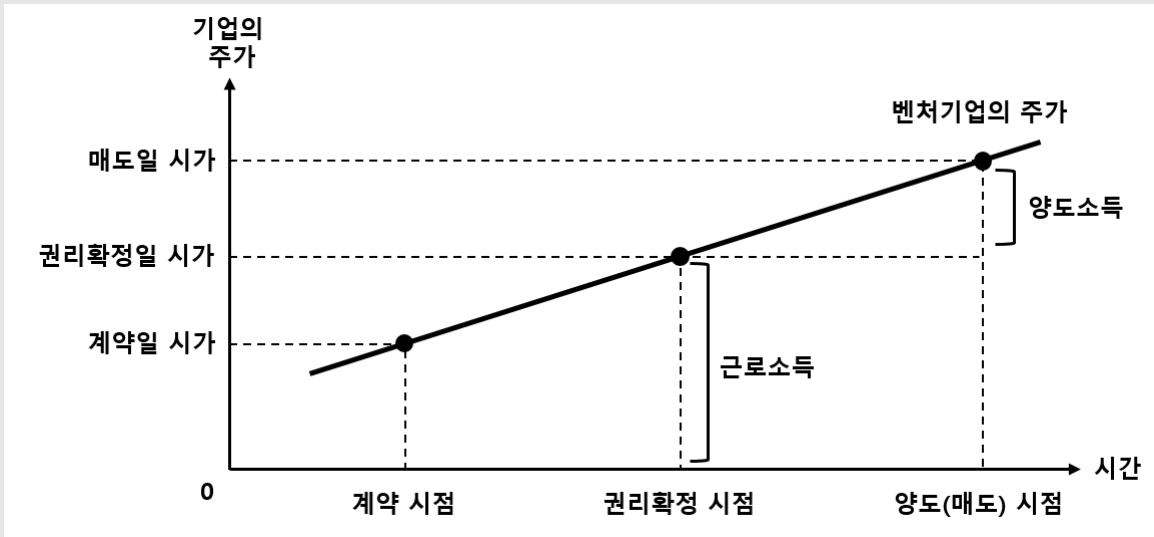
성과조건부주식의 정의 및 개념

- (정의) ‘성과조건부주식’이란 임직원에게 근속기간 또는 성과와 연동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미국 및 국내 일부 기업들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음
 - 종전의 성과조건부주식은 별도의 제도화 없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조항을 활용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임직원 등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나,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에 필요한 재원인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매우 제한적인 활용만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영입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성과조건부주식을 제도화하고, 배당가능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징) 회사가 성장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익을 주식 소유라는 형태로 임직원과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식에 근거한 보상(Stock-Based Compensation)의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 등이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경영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 성과 달성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성과에 연동하여 부여하는 보상(Performance-Based Compensation)의 특징을 가짐
- (작동원리)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한다는 점에서 그 즉시 양(+)의 이익이 현물로 발생(근로소득)하게 되며, 이후 회사 가치가 더욱 상승하면 주식 가치 상승분만큼 매도 차익(양도소득)을 얻게 됨
 - 무상으로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행사가격(매수가격)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차이가 있음



참고 1

성과조건부주식의 시점별 이익



참고 2

계약시점, 권리확정시점, 매도시점이란?

- 계약시점 : 회사와 임직원 등이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 권리확정시점 : 근속기간, 성과 등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당시 체결한 조건이 달성되어 주식 양도제한이 해제되거나, 주식을 교부받는 시점
- 매도시점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시점

성과조건부주식의 효용

- (벤처기업) 미래의 주식 가치를 통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현금보상에 비해 적은 비용이 발생하며, 자기주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식 기준 보상임에도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음
- (임직원) 주식을 받게 됨으로써 별도의 납입 없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무상으로 교부받기 때문에 교부 즉시 양(+)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더 높은 매도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무상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참고 3

성과조건부주식을 지급받은 임직원의 이익

- 시가 10,000원인 자기주식 100주를 성과조건부주식으로 교부받은 임직원은 교부받는 즉시 100만원의 현물(주식) 이익 발생
- 향후 시가가 100,000원으로 상승하고, 임직원이 주식을 처분했다면, 1,000만원의 현금 이익을 얻게 됨

성과조건부주식과 임직원의 보수·임금, 주식매수선택권과의 비교

- 성과조건부주식을 비롯한 주식 기준 보상은 임직원이 회사의 기술·경영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기여(노무)의 반대급부로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가짐
- 그러나, 주식 기준 보상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상법 제388조와 제415조의 **임원 보수**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과 구별됨**
 - 보상의 규모가 장래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와 연동되므로 임직원 등이 취하게 될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함**
 - 주가는 임직원의 기여에 따른 회사의 성과에도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자본시장의 거시적 상황** 등 시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위임 업무 수행 및 근로와의 대가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과 함께 대표적인 주식 기준 보상의 유형에 해당하지만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구분	주식매수선택권(신주발행교부형)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개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행사 가능	자기주식(구주)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성과 달성 시 지급한 주식의 권리 확정
이익 구조	매수 시점의 시가 차익 + 매도 차익	무상 교부에 따른 이익 + 매도 차익
대상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임직원
장점	(근로자) 비과세 혜택, 높은 부여 한도, 콜옵션이므로 시점 선택 가능 (회 사) 별도 비용지출 없음, 자본금 유입으로 재무 구조 강화	(근로자) 무상 지급, 별도 납입금 없음, 행사 시점의 고민 불필요 (회 사) 지분 희석 없음, 미래 지출의 높은 예측 가능성

성과조건부주식 도입의 장점과 단점

[기업의 입장]

○ 성과조건부주식의 장점

-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으로서 기능
- 임직원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기업경영에 관심을 고취하고, 보상 규모가 기업의 실적과 강하게 연동되어 동기부여를 통해 **근로익욕 제고** 가능
-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없이 주식 기준 보상 시행** 가능
- 회사와 주주, 경영진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잠재적인 주주를 다수 확보하게 되어 **적대적 기업 매수(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안정적 회사경영에 기여

○ 성과조건부주식의 단점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비용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주식매수 선택권에 비해 불리
- 주가 상승과 임직원 등의 노력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임직원 등의 노력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행될 위험이 있음
-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에 몰입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 향상을 저해하거나 위험회피적 의사결정만을 지속할 유인이 될 수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 계약 체결 시점과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시점 사이에 **주가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기존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 분산이 심화**됨에 따라 명의개서·주주총회 개최 등의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임직원 등의 입장]

○ 성과조건부주식의 장점

-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교부받는 주식의 가치 상당의 **확정적 양(+)**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주식시장이 침체에 있거나 기업이 안정적 성장단계에 진입하여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주식의 가치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별도의 납입금 없이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의 단점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량을 결정할 때 **공정성 및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임직원 등의 **내부 불만이** 고조될 수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 권리확정을 위한 근속 조건이 장기간이거나 성과 조건 달성의 난이도가 높게 설정되는 등 **조건 달성이 어려운 경우** 보상 방안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 유사한 주식 기준 보상인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세제 혜택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소득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이라는 특성상 제3자에게 처분하기 어려워 **환금성이 낮으며**, 상장주식과 달리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됨

1-2 성과조건부주식의 종류

자기주식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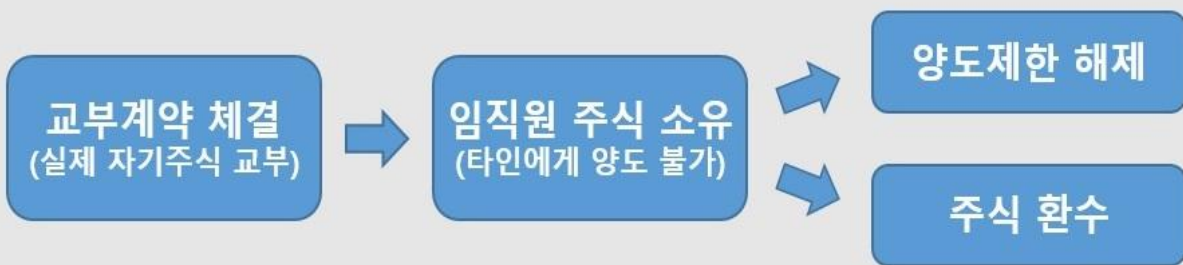
-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이 임직원에게 실제 교부되는 시기에 따라 ①선(先)지급형과 ②후(後)지급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벤처기업법 개정 전에 사용되었던 용어인 조건부주식보상(RSA)과 조건부가상주식(RSU)을 제도화한 것
 - ①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회사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되 성과나 보유기간 등 사전에 체결한 조건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주식 환수가 이루어지는 형태. 실제 주식이 지급되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배당, 의결권 등)도 보유
 - ② 후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자기주식의 교부 없이 성과조건 달성 시점에 자기주식을 **교부하겠다는 약정**만을 하고, 향후 성과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실제 자기주식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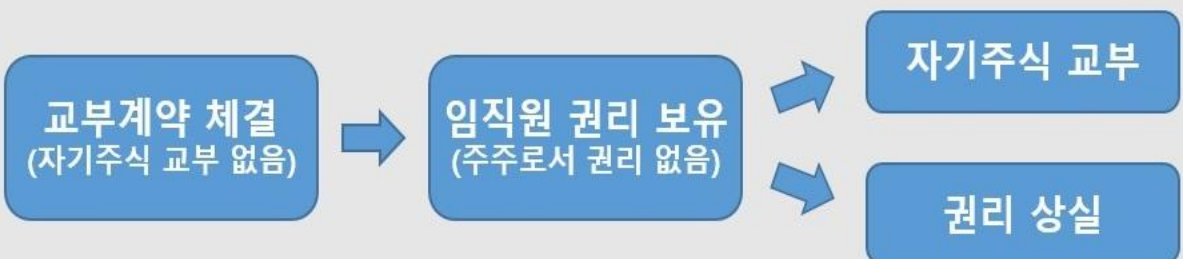
참고 4

자기주식 지급 시기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 흐름도

①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② 후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근거 법률에 따른 분류

- 현행법상 「상법」에서는 성과조건부주식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 규정 및 임직원과의 계약을 통해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 가능. 즉, 성과조건부주식이 **명문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법률은 벤처기업법이 유일**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하거나,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 가능
- 두 형태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주식 취득 요건과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절차에 있으며, 벤처기업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어떤 형태의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지 선택 가능**

구분		상법	벤처기업법
활용방법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맞추어 활용	벤처기업법상 자기주식 취득 특례를 활용
자기주식 취득재원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자본금을 제외한 순자산액
부여 한도		제한 없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한
절차	자기주식 취득	주주총회 보통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장점		별도의 절차·계약 없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 가능
활용 기업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기업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

이하에서는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을 중심으로 설명

제2장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체결

2-1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주체

교부계약 주체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주체는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의17 제1항)

-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 및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계속 유효**

(벤처기업법 제24조 제1항 제8호·제9호)

○ 주주총회에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한 안건 제출의 당사자는 **이사회**이므로, 성과조건부주식에 관련된 사항의 설계부터 교부계약 체결까지 **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 대상

○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 대상은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

- 성과조건부주식은 주가를 통해 직무수행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가를 통해 성과측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대주주 등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성과조건부주식이 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은 그 부여대상에서 제외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1항, 제16조의3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대상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한정되어 있어, 임직원뿐만 아니라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가 가능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보다 그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음

2-2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

■ 자기주식 취득 자원 ■

○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상법 제341조)

-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①자본금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준비된 법정 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참고 5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중 자기주식 취득 자원

순자산액	자본금	이익 잉여금	기타법정적립금	대손준비금
	자본준비금			세무상준비금
	이익준비금		기타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
	이익잉여금			배당가능이익
	기타항목			

-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별도의 특례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교부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자원인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법」에 의하면 자기주식을 활용한 보상 제도의 운영 불가

○ 벤처기업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자원을 「상법」보다 넓게 인정

-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자본금의 액을 제외한 부분을 자기주식 취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8)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절차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선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 i) 취득 상대방
 - ii)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iii)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벤처기업법 제16조의18 제3항)
- 자기주식 취득방식·제한 및 위반에 따른 연대책임의무는 아래와 같이 「상법」 상의 조항을 활용
 - ① **취득방식** (상법 제341조 제1항)
 - 통지 또는 공고로써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매입
 - 「상법」에는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거나 공개매수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이므로 상기 방법은 활용 불가
 - ② **취득제한** (벤처기업법 제16조의18 제2항·제4항, 상법 제341조 제3항)
 -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불가
 - 또한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연대책임의무 (벤처기업법 제16조의18 제5항, 상법 제341조 제4항)

-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
- 여기서 미치지 못한 금액은 자본금과 순자산액의 차액, 즉 결손금을 의미
- 다만, 이사가 결손금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음

○ 자기주식 취득 절차는 「상법」 및 벤처기업법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임**

- 벤처기업법은 특례 활용 시 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음



판례 1

- 상기한 주주총회 등의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그 효력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508 판결)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 벤처기업법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이행을 위해 활용하여야 함**
- 다만, 사정 변경 등으로 본래 취득한 목적에 따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처분
 - i)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 ii)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 iii)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벤처기업법 제16조의18 제6항)

2-3 정관상 근거 규정과 등기

의 의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등기**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2항·제7항)

- 성과조건부주식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고 등기하는 것은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공시(公示)**하는 효과가 있음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벤처기업법은 **정관상 근거와 등기를** 요구하는데, 이는 벤처기업법이 자기주식 취득 재원을 넓게 인정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

정관상 규정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관에 아래의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2항)

- 법률상으로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위해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방법(선지급·후지급)과 선지급 방법으로 부여된 주식에 대한 환수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제2항)



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교부 방법 및 환수 규정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한다)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2.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한 정관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정 (상법 제362조, 제390조, 제391조)

- 이사회일을 정하고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 가능
-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며, 통상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함

② 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제363조)

-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 (설립등기) 회사설립 시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으로써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상법 제299조, 제300조, 제314조)

 -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의 경우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14일)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고 그와 함께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변경등기) 회사설립 후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증받아**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변경등기 마쳐야 함
-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음**
 - i) 주주총회의 명칭
 - ii) 주주총회 개최일시와 개최 시각, 개최지와 장소
 - iii) 총주주의 수와 총주식의 수, 출석주주와 그 주식의 수
 - iv) 의장의 개회선언
 - v) 의사의 진행요령과 결과
 - * 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이유설명, 토론 및 의견의 요지, 결의의 방법·내용·결과 등
 - vi) 폐회선언 및 폐회 시각
 - vii) 의사록 작성 연월일
- 추가적으로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운영규정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과 권리확정 등에 관하여 정관에 자세하게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정관상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등기하는 등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정관의 하위규정으로 「성과조건부주식 운영규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위한 주주총회

■ 기본사항 ■

- 벤처기업법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체결에 따라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만큼, 이해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의 동의를 얻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자기주식의 무상 교부(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정관에 근거를 마련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하는 결의**를 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1항·제3항)

①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 벤처기업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관에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계약 체결 대상자를 특정**하여야 함

②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에 따라 교부 대상이 되는 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한정**

③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 가능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5항)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의 제한 및 조건은 **벤처기업법 및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

- 해당 성과조건이 주식 양도제한의 해제 또는 주식 교부의 기준이 되므로 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의 근로의욕 고취 효과가 달라짐

- 주주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주주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뉘는데,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관한 의안 상정 및 결의는 **주주총회 유형과 상관없이 가능**하므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희망하는 시기에 따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거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가능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위한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 특별결의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1항, 상법 제434조)

-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 성과조건부 주식계약 체결 대상자가 주주인 경우, 해당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판례 2

-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음(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주주총회 결의를 허위로 조작하여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과 정관을 위배한 부여로 효력이 없음

- **주주총회**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체결의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고, 계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음**

성과조건의 설정

- 성과조건부주식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에 연동한 보상** 제도 중 하나로서, 성과조건부 주식의 교부 및 양도제한 해제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성과조건의 설계가 성과조건부 주식의 효과성을 결정하므로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조건의 설계가 결정적임**
- 벤처기업법은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 또는 양도제한 해제를 위한 최소 재임(재직)기간 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성과조건의 구체적인 기준, 한도 등에 관하여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대상 임직원의 직급(직위), 근속기간, 담당 업무의 중요도, 동기부여의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관의 취지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참고 6

성과조건부의 예시

- (사례1) 일정 기간을 기준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재직 시 양도제한 해제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재직 시 약정된 성과조건부주식 전체의 20%, 3년 재직 시 전체의 50%, 4년 재직 시 전체의 100%에 대해 양도제한 해제
- (사례2) 특정 사건을 기준
 -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 양도제한 해제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4년과 코스닥 상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양도제한 해제
- (사례3) 계량 가능한 성과와 연동
 - 회사의 매출액이 주주총회 결의일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한 해의 마지막 날에 양도제한 해제
 - 00기술의 특허출원 시점에 30%, 특허등록 시점에 100%에 대한 양도제한 해제

- 다만,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계약을 통해 줄일 수 없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5항)

2-5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신고

신고의무

- 벤처기업은 아래의 각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9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12 제2항, 시행규칙 제4조의7)
 - i)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ii)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 iii)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벤처기업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신고 제도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령 위반 및 분쟁 사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

신고내용

-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신고서에 ②정관 사본 및 ③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중기부에 제출하여야 함
 - 교부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자기주식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히 신고 의무가 발생. 즉, 후지급 방법으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여 미래에 자기주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교부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벤처기업과 임직원 사이에 체결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①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①신고서에 ②정관 사본 및 ③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중기부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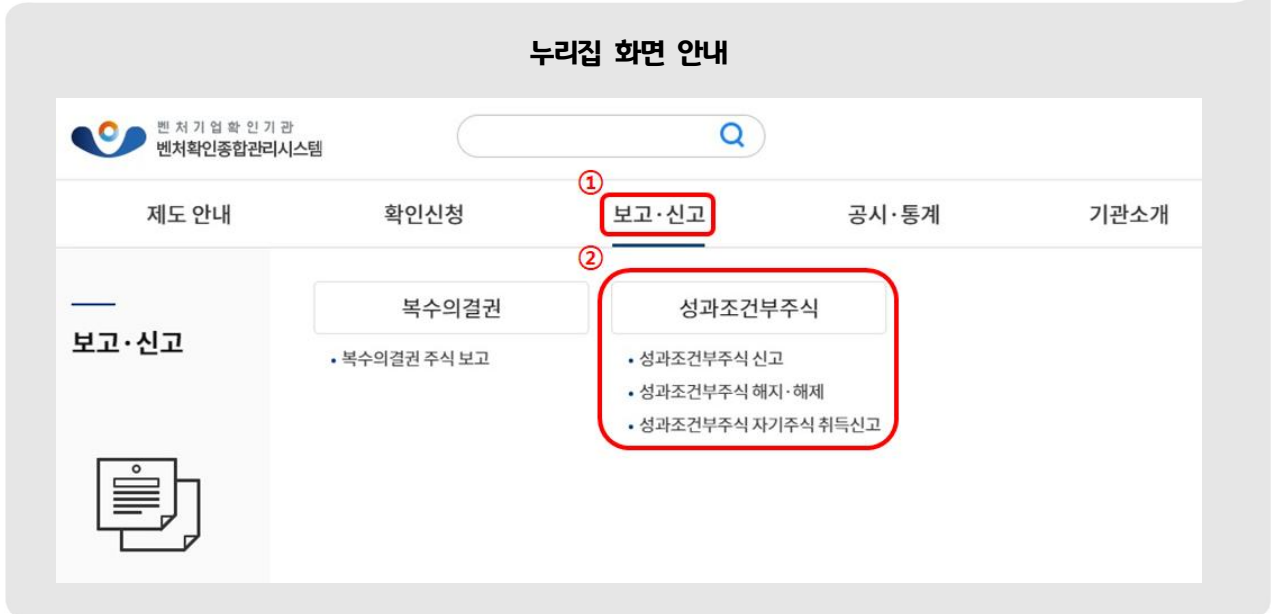
- i)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 또는 상장 벤처기업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
- ii)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 또는 상장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 iii) 체결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내용에 따라 진행된 자기주식의 교부 및 성과조건 미달성에 따른 자기주식의 환수
- iv) 성과조건부주식과 관련된 정관의 개정
- v) 성과조건부주식교부를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 vi)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에 맞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 vii) 기타 벤처기업법과 관련되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양도

신고방법

-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신고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됨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 “보고·신고 → 성과조건부주식 신고” 순서로 접속



참고 7



- 신고 내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 신고 접수 및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8)에서 처리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신고서 양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신고내용	주주총회 결의 일자		부여 당시 시가(주식 가치)	
	년	월	일	1주당 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 사항

연번	성명	계약의 방법	주식 수	취득·양도의 제한 및 조건
합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1호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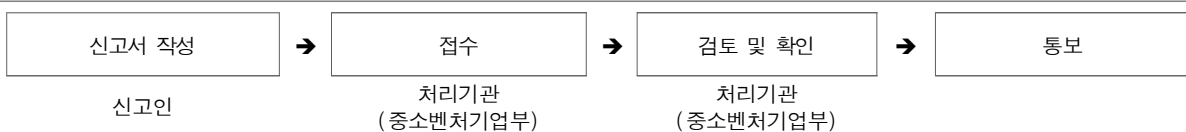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성과조건부주식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신고서 양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성과조건부주식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자기주식 취득 사항

연 번	일자	취득 상대방	취득한 주식의 수
합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3호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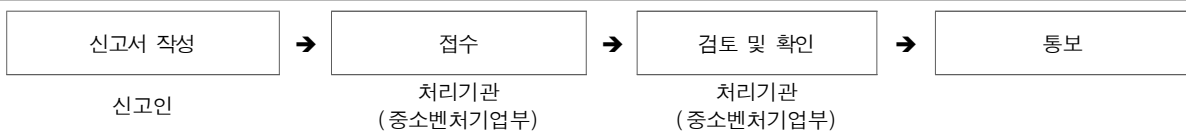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2-6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교부계약의 체결

- 벤처기업법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중요 사항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간의 **사적자치에 맡겨두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과 주식교부대상자는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형태로 **자유롭게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체결 가능**
- 벤처기업이 이사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음

(상법 제398조)

교부계약서의 작성 및 비치

- 벤처기업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4항)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서의 형태**는 별도의 규정 없이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것을 권고**
 - i) 재직기간의 산출 방법, 성과측정 등 **성과조건 달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 기준
 - ii) 기한 내로 성과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시, 기 부여된 자기주식을 **환수**하거나 주식을 교부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는 뜻
 - iii) 그 밖에 계약의 **기한**이나 해지·해제 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
 - 작성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서는 성과조건을 달성하여 자기주식의 양도제한이 해제되거나(선지급), 자기주식을 교부받는(후지급) 시점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6항)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효력

-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없는 대상과 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주주총회를 통해** 체결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은 **유효하지 않음**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방법에 따라** 교부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효과가 다름**
 - ① **(선지급 방법)** 교부계약 체결 시점에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이 임직원 등에게 교부되어 소유권 이전, 배당·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다른 주주와 동일하게 보유하지만, 주주총회 및 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성과조건 달성 시점까지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 ② **(후지급 방법)** 교부계약 체결에 따라 성과조건 달성 시 자기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형성. 실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 없음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성과조건부주식은 성과 등에 연동하여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임직원 보상 제도 중 하나로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 또는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 효과 등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사적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성과조건부주식의 해지·해제는 관련 법령에서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부계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내용에 의해 규율됨**



참고 8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해지·해제 사유 예시

- 임직원의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이 회사 내규·취업규칙 위반 또는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 임직원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겸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사유 발생 등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3장 성과조건부주식의 권리확정

3-1 성과조건부주식 권리확정의 의의와 효과

■ 권리확정의 의의

- 성과조건부주식의 **권리확정**이란 **성과조건을 달성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있던 주식의 양도 제한이 해제되었거나(선지급), 교부받기로 한 주식을 교부받은 상태를(후지급) 의미**
- 다만, 주주총회 및 계약서에서 설정한 성과조건을 달성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은 경우 권리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5항)
-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계약을 통해 **줄일 수 없음**

■ 권리확정의 효과

- 권리확정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거나, 주식을 교부받은 상황에서는 일반 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됨.** 즉, 이 시점부터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임직원은 제3자에게 그 주식을 매도할 수 있음
- 다만, 명의개서 등이 동반되어야 주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형성되며,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 주식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기간 중의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상법 제337조, 제354조)



판례 2

-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와 달리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제도**이므로 주식을 교부받는 임직원은 **취득의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3-2 성과조건 미달성 시 권리관계의 변동

성과조건 미달성의 효과

- 성과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임직원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선지급), 회사에 주식 교부를 요구할 수 없음(후지급)
- 일정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성과조건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벤처기업은 선지급 방법으로 교부한 주식을 환수할 수 있음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2항)

- 주권이 발행된 경우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권양도 청구**를 할 수 있음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준하여 교부되었던 주식은 **당연히 회사에 복귀함**



판례 3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함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교부계약의 해지·해제의 효과

- 계약의 해지는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체결 시점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

(민법 제543조)

- 해지와 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의 효력 소멸 시점. 계약 해제는 주식 교부 시점부터 임직원이 지급받은 배당금의 원상회복 등을 포함하므로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해제가 아닌 해지가 적절**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권양도 청구 및 주식교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며,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로서 **주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됨**

3-3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분쟁의 해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법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지만, 당초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다투 수 있음

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또는 부존재확인 소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 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음



참고 0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의 유형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 소
원고	주주, 이사, 감사	소의 이익이 있는 자	
피고	벤처기업		
청구원인	결의절차의 하자 결의내용 정관위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	결의절차의 중대한 하자
제소기간	결의일로부터 2월	제한없음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결과 주주총회가 취소, 무효 혹은 부존재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그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은 무효임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법

- 성과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선지급 방법으로 주식을 교부받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령 및 계약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양수인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회사는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투 수 있음

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수인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고, 양수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상법 제337조)



판례 4

-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주권 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8719 판결)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② 주권이 발행된 경우

- 주권을 취득한 주식 양수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성과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양수인은 선의로 주권을 취득한 것이 됨. 선의로 주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음



판례 4

-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로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경우, 회사는 양수인의 주권 선의취득에 따라 주식의 환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인인 임직원에게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해지·해제 시 다투는 법

- 선지급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주식이 교부된 후,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이 해지·해제되어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임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벤처기업은 임직원에게 주식을 양도청구의 소 및 주식 반환 지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반대로, 해지·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벤처기업이 교부계약의 해지·해제를 이유로 임직원에게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다면, 임직원은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을 양도청구의 소 및 주식 교부 지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4장 성과조건부주식 과세체계

4-1 성과조건부주식 조세제도 개관

주의사항

-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는 신설 제도로 납세의무, 수입시기, 조세특례 등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법령·판례·유권해석 등이 부재한 상황
- 즉, 매뉴얼에 있는 설명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유권해석이 아닌 벤처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의 일종이며, 향후 법령 개정, 판례, 새로운 유권해석 등에 의해 과세체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조세제도 개관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 이슈는 크게 ①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납부, ③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한 벤처기업의 손금산입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기 위해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② **(근로소득세 납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며, 이에 따라 임직원은 주식을 교부받는 시점에 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③ **(손금산입)**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게 되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만큼을 과세소득 산정 시 제외하기 위해 손금에 산입시켜야 하고, 교부했던 주식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으로 산정하여 과세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함

4-2 부당행위계산 부인

개 념

- 세법상 부당행위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을 의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행위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국세기본법에서는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라는 특성상 친족관계를 제외하고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음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맞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그 거래행위가 부인될 수 있음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 부담이 감소한 거래 주체인 고가양수자 또는 저가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의제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따라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절한 시가로 매입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3 임직원의 근로·양도소득세 납부

소득의 구분

- 소득은 크게 ⁽¹⁾종합소득, ⁽²⁾퇴직소득, ⁽³⁾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¹⁾종합소득은 가이자소득, ⁽⁴⁾배당소득, ⁽⁵⁾사업소득, ⁽⁶⁾근로소득, ⁽⁷⁾연금소득, ⁽⁸⁾기타소득으로 구분
(소득세법 제4조)
-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⁶⁾근로소득이며, 향후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³⁾양도소득에 해당
 -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 처분 시 납부하는 세금의 구분 및 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

근로소득세의 납부

[선지급 주식의 근로소득세]

- 선지급 방법으로 부여받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계약일이며, 근로소득은 주식을 **교부받는 날의 시가**로 계산됨



해석 1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 받는 경우 당해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 (국세청 2005.11.4. 해석 서면1팀-1341)
- 선지급 방법으로 부여받은 주식의 권리확정 전에 **주식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임직원은 주식을 **반납**하고 당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경정)**



해석 2

- 당해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 (국세청 2005.11.4. 해석 서면1팀-1341)

- 선지급 방법으로 부여받은 주식의 근로소득세를 주식 교부 시점에 납부하면, 낮은 시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 유리함
- 다만, 위 유권해석은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나온 유권해석으로 향후 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후지급 주식의 근로소득세]

- 후지급 방법으로 부여받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성과조건 성취로 주식을 취득한 때이며, 근로소득은 주식을 교부받는 날의 시가로 계산됨



판례 5

-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임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귀속시기는 권리확정일 (조세심판원 2009.6.30. 재결 조심2009서0180)
- 임직원이 부여받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는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국세청 2011.9.30. 해석 원천세과-600)

- 후지급 방법으로 부여받은 주식은 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식 반납에 따른 근로소득세 재정산 불필요

양도소득세의 납부

-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다만,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됨 (소득세법 제94조)
- 상장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닐 시 비과세. 다만, 상장주식이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됨
- 위 설명은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납부 의무 및 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

4-3 손금산입

개 념

- 손금산입은 당해연도 기업회계에서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주는 세무조정 사항을 말함
- 회사의 지출이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세 납부액은 **반비례하여 줄어들게** 됨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한 자기주식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은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자기주식 교부**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에 산입**됨



법령 2

■ 국세 기본통칙 - 법인세법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경우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만큼 손비로 인정되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따른 손비는 **장부가액만큼만** 인정되는 것이 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한편, **선지급** 방법으로 교부된 주식이 **환수**하는 경우, 반환된 시점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게 됨

Q & A

I.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Q.01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기업은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아 벤처기업법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자기주식 취득 재원의 경우 일반기업은 직전 결산기 기준 배당가능이익 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순자산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으로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Q.02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을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임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요?

- ▶ 불가능합니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서만 교부가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교부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상 요건을 갖추어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Q.03

벤처기업 입장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이 스톡옵션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희석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대부분 신주 발행형을 택하고 있는데, 스톡옵션 부여자가 이를 행사할 때마다 신주가 발행되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성과조건부주식은 발행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제도이므로 권리확정을 통해 주식이 교부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분희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II. 비상장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체결

Q.04

성과조건부주식은 누구에게 교부할 수 있나요?

-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최대주주·주요주주나 그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등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교부할 수 없습니다.

Q.05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할 수 있나요?

- ▶ 벤처기업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 일부를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06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관의 내용에 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근거규정이 되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은 강행규정(당사자간 사적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정관의 내용과 취지에 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이 체결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근거가 되는 정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07

성과조건부주식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만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가 무효인가요?

- ▶ 아닙니다.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에 해당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효력요건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에 기재를 했지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등기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규정을 정관에 기재한 날(정관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08**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 및 양도제한 해제의 조건은 회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나요?**

- ▶ 벤처기업법은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 또는 양도제한 해제를 위한 최소 재임(재직) 기간 이외 다른 제한 조건을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대상 임직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및 양도제한 해제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최소 재직(재임)기간인 2년보다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Q.09**성과조건부주식의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 벤처기업법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체결·해지·해제 및 주식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법률상 의무입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서 신고 기한, 과태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신고자료는 현황 파악 및 제도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신고 사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Q.10**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어디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거가 된 정관 사본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결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과조건부주식과 관련된 신고는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venturein)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Q.11**일정 기간 근무하고 성과조건부주식을 받기로 계약했는데, 더 이상 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이 경우 주식을 받을 수 없나요?**

- ▶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향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다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 유효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III. 비상장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의 권리확정

Q.12

체결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성과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해당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및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회사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이미 교부된 자기주식은 환수되고, 교부되지 않은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교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와 성과조건 자체는 문언상 별개이므로, 성과조건 미달성을 이유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면 해당 조건을 해지 또는 해제 사유로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13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후, 임직원이 재직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상호 합의로 해당 주식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나요?

-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을 체결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계약을 통해 줄일 수 없습니다.

Q.14

성과조건이 달성되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려 합니다. 상호 합의로 주식에 대한 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 ▶ 벤처기업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를 조건으로 하여 벤처기업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한다면 이는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직원이 합의하더라도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부 록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 률

-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②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 ③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 ④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 ⑥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 상대방
2.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④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⑦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⑧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 ②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 ③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①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1.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한다)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2.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②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③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제16조의19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시행규칙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를 말한다.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3. 법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2

상법

법 률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5. 20.>
-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填)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② 법 제5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국세기본법

법 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 략)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 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중 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1. 4촌 이내의 혈족
- 2. 3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소득세법

법 률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삭제 <2016. 12. 20.>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삭제 <2016. 12. 20.>

5

법인세법

법 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 략)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생 략)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 략)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회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회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회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회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후 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관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